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모집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법인, 개인사업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8.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4. 3. 8.(금) ~ '24. 6. 28.(금)
- 상반기 보급대수(예정) : 승용 약 2.5만대, 화물 약 2천대
 - ※ 금회 미반영 물량(승용 약 5천대, 화물 약 672대) 및 상반기 미소진 물량은 하반기에 통합하여 보급 예정
 - ※ 별도 배정물량
 - 승용 지원물량 중 10% 이상은 택시 지원 물량(3/4분기부터 통합 집행)
 - 화물 지원물량 중 20% 이상은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10% 이상은 중소기업 생산 지원 물량(7월부터 통합 집행)
 - 승용·화물 지원물량 중 10% 이상은 우선순위가 부여된 법인(3/4분기부터 통합 집행)
 - K-EV100 참여업체 : '30년까지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 목표를 부여받은 기업
- 1회 구매가능 대수 : 승용 100대, 화물 50대
 - ※ 1회 구매시 구매가능 대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맞춰 구매 사유 등 자체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하며, 다회 신청에 따른 누적대수는 제한없음

- 지원 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작사가 생산한 차량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국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승용, 화물), 개인사업자(승용)가 보조금 지원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리스/렌탈(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 리스) 사업 목적 구매 포함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후, 재지원제한기간* 이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전기화물차만 해당)
 - * (화물) 5년
 - ※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신청자격(필수조건)

-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②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서식 확인 및 서명(별지 서식)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국비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단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최대 1,100만원
소형	최대 55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초소형	250만원(정액)	초소형	400만원(정액)

*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 ('23.9.25일 이전 가격 대비)에 비례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50만원, 소형 최대 650만원** 지원 가능

※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가능

○ 추가보조금

구 분		추가 지원
전기 승용	중·대형, 소형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 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리스/렌탈)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리스/렌탈 사업목적 구매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차종별 국비 보조금 비례 차등 지원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7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전기 화물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국비의 30%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 국비의 10% 추가 지원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 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 없음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7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4.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개인사업자(승용)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정 차종에 한하여 신청 및 접수 가능

※ 출고·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②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추가보조금 지원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 전기택시/리스·렌탈/소상공인/초소형 거점사업/택배용/경유화물차 폐차 등

※ 세부 내용은 [붙임1] 제출서류 안내 참고

- ③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유지 기한 한시적 연장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①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을시 구매신청 자격 부여
②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처리
③ 한국환경공단은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시 확정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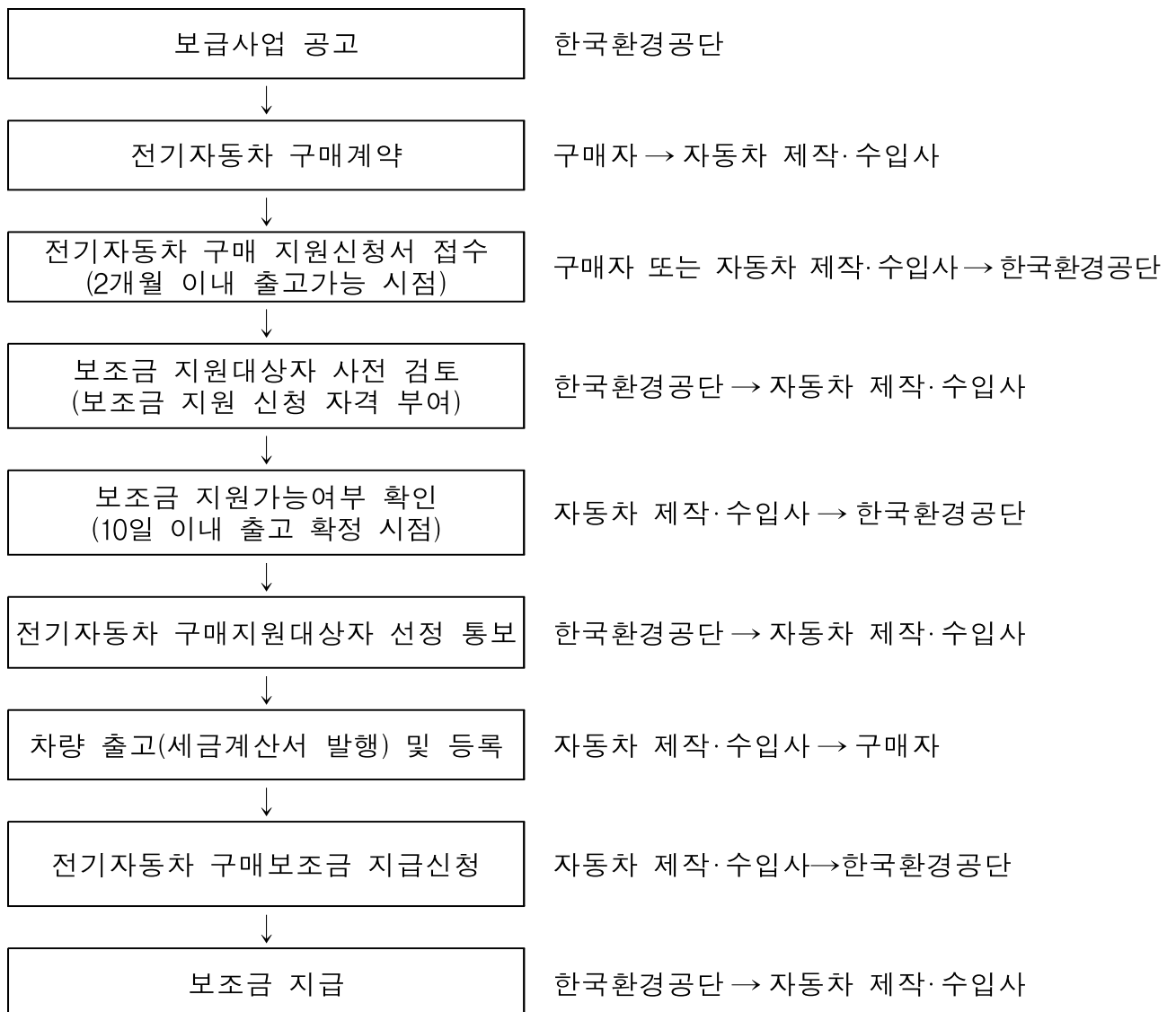
5.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절차

○ 보조금 지급

- ① 차량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으로 신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지급 절차



※ 구매 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차량 출고·등록 후 보조금 지급신청 승인 순으로 지급됨

6. 유의사항

- ① 각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본사는 보조금 지급 최초 신청 이전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직인 포함 작성하여 eunbi@keco.or.kr 로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불가)
- ②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③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 지원 대상 차량의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사유 검토 후 사전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⑤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내 미보완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④ 전기차 신청대수는 보조금 지급 절차 중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동일해야함(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
 - * (예시)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전기차 10대를 계약체결하고 지원신청하여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은 후 차량 9대 또는 11대 출고 후 지급신청시 보조금 지원 불가
- ⑥ 보조금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보조금 지급가능 여부 미확인 출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 내 미접수 등), 허위정보 기재 등 신청내용과 상이할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전기차 구입시, 차량가액 등에 따라 국가 지원사업 등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관계기관의 확인 필요
- ⑧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7.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5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②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한국환경공단 (☎ 032-590-9907, 9908, 9911, 9912)으로 문의

< 제작·수입사 문의처 >

제작사(승용)	연 락 처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현대자동차	080-2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BMW	080-269-2200	한신자동차	031-996-8890
한국GM	080-3000-5000	제인모터스	053-630-2800
스텔란티스(한불모터스)	02-545-5665	파워프라자	02-855-4955
테슬라	080-617-1388	제이스모빌리티	1533-8816
벤츠코리아	02-6456-2567	이브이케이엠씨	02-553-9866
케이지모빌리티	080-500-5582	GS글로벌	02-2005-5191
폴스타오โต모티브	080-360-0100	경인모터스	032-563-0303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오텍	02-2628-0660
볼보코리아	1588-1777	이엔플러스	031-366-96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80-767-0089	진우에스엠씨	063-770-7277
스마트솔루션즈	02-6951-3425	대창모터스	043-535-6336
대창모터스	043-535-6336	비바모빌리티	070-8276-6999
씨보모빌리티	1522-9282	일진정공	031-376-9012
마이크	1544-0703	디피코	033-340-4800
		마스타전기차	1661-2500
		스마트솔루션즈	02-6951-3425
		에스에스라이트	1644-7752

[붙임1] 제출서류 안내

[별지 서식]

- 제1호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 제2호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사업자)
- 제3호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제4호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
- 제5호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신청서
- 제6호 전기자동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 제7호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제8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 제9호 전기화물차 보조금 환수 요청서

[붙임2]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제출서류 안내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제출]

□ 구매지원 신청 시

○ 공통 제출

- ①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 ②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사업자)
- ③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④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사진 등)
- ⑥ (전기화물차)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전기화물차 신청자 모두 작성, 구매 지원신청서 뒤에 함께 첨부
- ⑦ (리스·렌탈) 리스·렌탈 계약서 및 리스·렌탈 이용자 증빙서류*
* 실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추가지원금 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 ①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택시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제출
- ②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명시)
- ③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최초, 변경),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 가능)
-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증빙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④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 가능)
- ⑤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 별도 배정물량 증빙서류

- ①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② (택배 등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③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공통 제출

- ① [별지 제3호]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 ② [별지 제4호]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

※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이메일(eunbi@keco.or.kr)로 1회 제출(대리점 추가제출 불필요)

- ③ 자동차등록증
- ④ 세금계산서
- ⑤ 통장사본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공통	☐ 해당없음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참여자			
	승용	☐ 택시(중소기업) ☐ 리스·렌탈 사업			
	화물	☐ 소상공인 ☐ 택배용(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후 택배업 6개월 유지) ☐ 경유화물차 보유자 (보유수량: 00대 / 폐차: 00대 / 폐차 미이행: 00대)			
주 소 (등록주소지)					
담당자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별도 배정수량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사업자)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 해당없음 ☐ 택시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참여자 ☐ 리스·렌탈 사업				
주 소 (등록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개인사업자명) : (인,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별도 배정물량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개인사업자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개인사업자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개인사업자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구매자	법인명 (개인사업자명)		접수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	차량명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본사 등록 계좌	예금자명	본사 등록 계좌
	계좌번호	본사 등록 계좌		
	지급요청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제작·수입사) : (인,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통장사본(본사) 1부.				

[별지 제4호 서식]

2024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

신청자 (제작·수입사)	법인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지정 등록을 신청하니 당사의 전 영업대리점에서 신청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매 회 본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전기차 제작·수입사 : _____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5호 서식]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신청서

법 인 명 (사업자명)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경유 화물차 차량 정보			
구 분	① 경유 화물차 차량번호	②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신청 여부	③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수령 여부
보 유 현 황		○	×
		×	×
		○	○
폐 차 현 황 (‘23.2.13 이후)		×	○
		○	×
		○	○

(신청번호:)

유의사항

- ① (공통) 보유 또는 ‘23.2.13 이후 폐차한 경유화물차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 ② (보유 현황) 경유화물차를 보조금 지급 신청시까지 폐차를 완료하여 폐차 이행 보조금 50만원을 신청할 경우 ‘○’ 기재, 계속 소유하여 폐차 이행 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할 경우 ‘X’ 기재
- (폐차 현황) ‘23.2.13. 이후 폐차 차량으로 폐차 이행 보조금 50만원 신청할 경우 ‘○’ 기재
- ③ (공통) 폐차(예정 포함)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수령 또는 수령 예정일 경우 ‘○’ 기재, 수령하지 않았거나(예정 포함) 조기 폐차가 아닐 경우 ‘X’ 기재
- ④ (폐차 현황) ‘23.2.13. 이후 폐차 차량으로 폐차 이행 보조금 수령 이력이 있는 차량은 ‘○’ 기재 - ()안에 해당 구매 지원신청 건 신청번호 작성

※ 폐차 현황은 폐차 이행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서만 작성해도 무방함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거짓된 정보 기재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등에 있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소유주) : _____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법 인 명		사 업 자 번 호	
대 표		업 종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소 개			
사 업 장 사 진			
사 업 내 용 (계 획)			

초소형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화물 확인(신청)서

1. 법 인 명 :
2. 성명(대표자) : (사업자번호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별첨. 사업계획서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000 대 표 이 사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소유주	법인명		연락처	
	주소			
차량정보				
차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예정)일				
말소사유	☐ 수출 ☐ 폐차 [☐ 교통사고, ☐ 기타(사유 작성)]			
운행불가일	교통사고 시 작성		보상금액	교통사고 시 작성
말소시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5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말소 관련 증빙서류 등				

□ 전기승용차

(단위: 만원)

구분		제작·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리스/렌탈 추가보조금
승용	중·대형	현대	Electrified G80 AWD 19인치	310	85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25	9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10	85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00	83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285	78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95	81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10	85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90	1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90	1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73	175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73	175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45	167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30	163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06	157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700	178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706	1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6	1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706	1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87	174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593	155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651	171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601	157
			아이오닉5 N	280	77
	중·대형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75	171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3	173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61	167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84	174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684	174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49	164
			니로 플러스(DP)	592	163
			The all-new Kia Niro EV	596	160

구분		제작·수입사	차종	국비보조금	리스/렌탈 추가보조금
승용	중·대형	기아	EV6 GT	267	73
			EV9 2WD 19인치	301	83
			EV9 2WD 20인치	298	82
			EV9 4WD 19인치	287	79
			EV9 4WD 21인치	291	80
			EV9 GTL 4WD 21인치	286	79
		BMW	iX3 M Sport	205	56
			i4 eDrive40	212	58
			i4 M50	198	54
			iX1 xDrive30	184	50
		테슬라 코리아	Model Y RWD	195	54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EQB300 4MATIC(5인승)	217	60
			EQB300 4MATIC(7인승)	217	60
		스텔란티스 코리아	Peugeot e-208	349	96
			Peugeot e-2008 SUV	331	91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ID.4 Pro	492	136
			아우디 Q4 40 e-tron	196	54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	54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457	126
			토레스 EVX 2WD 20인치	443	122
		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MY23)	427	113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3)	163	45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MY24)	439	121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4)	186	51
		볼보자동차 코리아	볼보 C40 Recharge Twin	201	55
			볼보 XC40 Recharge Twin	192	53
		한국토요타 자동차	렉서스 RZ450e	276	76
	경형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2	147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2	147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2	147
	초소형	마이브	마이브 M1	250	69
		세보	CEVO-C SE	250	69
			CEVO-C SE VAN	250	69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차량가격 인하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이 포함된 금액

□ 전기화물차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화물	소형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554
			봉고3ev PEACE 더블캡	481
		현대자동차	포터 II 일렉트릭(24MY)	1,050
			포터 II 일렉트릭(23MY)	1,050
		기아	봉고 전기차	1,050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261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916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169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306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291
		대창모터스	다니고C	975
			다니고C2	268
			다니고R	1,147
			다니고R2	1,055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픽업	295
			MASADA 3세대 2밴	274
			MASADA 3세대 4밴	246
			MASADA 2밴	299
			MASADA 4밴	269
			EC35 2밴	194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405
			이티4밴	364
		오텍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1,118
		이엔플러스	이엔1톤롱바디카고	850
			이엔플러스EV1톤롱바디트럭	895
		GS글로벌	T4K	462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336
			젤라 P200	478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봉고)	837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포터)	855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333
	경형	디피코	포트로350L-탑	788
			포트로350L-픽업	788
	초소형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400
			MASTA HIM	400
		디피코	포트로-탑	400
			포트로-픽업	400
			포트로-탑S	400
			포트로-픽업S	4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